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아래의 절차에 맞게 이행사항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사항 가이드

사업장마다 해당하는 이행사항을 판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신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실 예정이시거나, 기존 취급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변경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으신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이행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취급하는 화학물질 파악하기
2. 화학물질 유해성 여부 판정하기
3. 유해화학물질 이행사항 파악하기
4. 최대보유량 산정하기
5. 파악된 이행사항에 따라 업무 진행하기
6. 업무 이행 흐름

1. 취급하는 화학물질 파악하기

취급하는 제품 및 물질의 MSDS, LOC 등을 참고하여 취급 **화학물질 목록을 구성** 작성합니다.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확인합니다.

(그림 1 예시)

화학물질명	이명(관용명)	CAS No.	함유량(%)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2-뷰타논(2-Butanone) 뷰타논(Butanone)	78-93-3	90-95
아세톤(Aceton)	2-프로판논	67-64-1	5-10

2. 화학물질 유해성 여부 판정하기

취급물질 목록을 작성한 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별**합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cee.go.kr

물질들의 CAS No.를 조회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화학물질 통합검색

CAS No

CASNO를 입력해주세요

고유번호

고유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영문명

영문명을 입력해주세요

국문명

국문명을 입력해주세요

검색

※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급성, 만성, 생태, 사고대비 등의 유해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닌, **함량 및 규제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규제대상함량정보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 함량기준(%)	비고
사고대비물질	15	메틸 에틸 케톤 및 이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는 함량을 파악하고, **실제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해당 함량 이상으로 취급하는지 파악** 후, 유해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이행사항 파악하기

로그인 이후, 마이페이지의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탭을 활용합니다.



화관법 민원24 icis.mcee.go.kr/cdms

파악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주: ICIS24 > 마이페이지 >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사업장 정보

화학안전관리번호	발행(명칭)	발행승인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길
장외영점명가서	장외영점명가서 책임정보	
기준 장외 DB 의 화관법 관리수준	기준 장외 DB 의 영점명가서(신고) 구분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1군, 2군, 면제)

- 취급물질 및 최대보유량 정보 현황화

현재 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에 맞게 함유량, 최대보유량, 성상을 수정(혹은 삭제) 후 **계산(재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정된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규정수량을 적용한 **화관법 관리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주기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황화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보관시설에서 해당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

(※ 참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또는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4)

기존 장외 DB 의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현황화하시려면, **함유량**, **최대보유량**, **성상**을 수정 후 **수정**버튼을 누르시거나, **물질추가**, **삭제** 버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화학물질명	CAS No.	고유번호(유해성물질)	함유량(%)	최대보유량(톤)	성상	관리
1	메틸 메틸 케톤	78-93-3	97-1-81	99.0000	100.00000	액체	수정 삭제

2. 개정된 규정수량 적용한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결과

순번	화학물질명	CAS No.	고유번호(유해성물질)	유해성 구분	함량기준(%)	최대보유량(톤)	화관법 작성수준	영점명가서 신고 구분
1	메틸 메틸 케톤	78-93-3	97-1-81	사고대비	25.0000	100.00000	2군	매가

위 표에 따라 귀 사업장은 **영업허가** 대상이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시스템에서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통해 함유량과 최대보유량, 성상을 작성하고, 계산을 진행합니다.

※ 이때,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최대보유량 산정하기

취급시설별 보유량을 계산합니다.

01

제조사용시설, 설비류 최대보유량 계산

- 물질 취급 시, 물질이 흐르는 모든 설비류를 파악합니다.
- 설비류는 도금조, 혼합기, 가열로, 반응기, 응축탑 등을 포함한 **모든 물질이 체류하는 설비를 지칭**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이 인입되는 함량을 계산합니다. 이때, 유해화학물질이 설비 내에서 앞서 확인했던 함량기준 미만으로 체류한다면, 해당설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물질이라도, 함량 기준 이상이라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로 구분)
-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설계용량을 파악하고, 해당 용량에 물질이 가득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물질 톤수를 계산합니다.
EX) 설계용량 3톤의 반응기에 유해화학물질이 들어갈 경우, 물질 톤수 3톤으로 계산
- 모든 물질별 계산된 톤수를 전부 더하여, 제조사용시설 최대보유량을 계산합니다.

02

보관, 저장시설 최대보유량 계산

- 보관, 저장량을 톤수로 계산하여, 물질별로 합산합니다.
- 보관량은 최대보관예정량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보관하는 시점의 보관량으로 계산합니다.
- 저장량은 저장탱크의 용량을 특정 용량까지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면, 해당 용량을, 저장량을 특정할 수 없다면, 저장탱크 설계용량을 저장량으로 계산합니다.

03

최대보유량 합산

- **계산된 물질별 시설의 최대보유량을 모두 더하여 최대보유량을 계산합니다.**



5. 파악된 이행사항에 따라 업무 진행하기

화관법 민원24 자료실 icis.mcee.go.kr/cdms/board/listData.do



민원24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수준 확인을 활용하는 더 상세한 방안은 정보마당, 자료실에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자료실

HOME > 정보마당 > 자료실

순번	제목	작성기관	작성자	작성일
1	(Q&A 추가)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기능 사용 매뉴얼_250815Ver.2) 및 화관법 작성수준 판단요령	화학물질안전원	권다영	2025-08-08 15:53:15

시스템의 표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외로, 이행사항을 구분하는 기준은 최대보유량에 따른 규정수량 판정을 따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법제처에 제정된 고시를 확인하면, 별표 서식으로 각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별표2, 또는 별표3 서식을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 목록에 취급하시는 유해화학물질이 없다면, 유해성 정보에 따라 별표1 서식을 활용하여 규정수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EX) 메틸에틸케톤의 규정수량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번호	함량기준 (% 이상)	최하위 규정수량(톤)	하위 규정수량(톤)	상위 규정수량(톤)
15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78-93-3	25	0.05	2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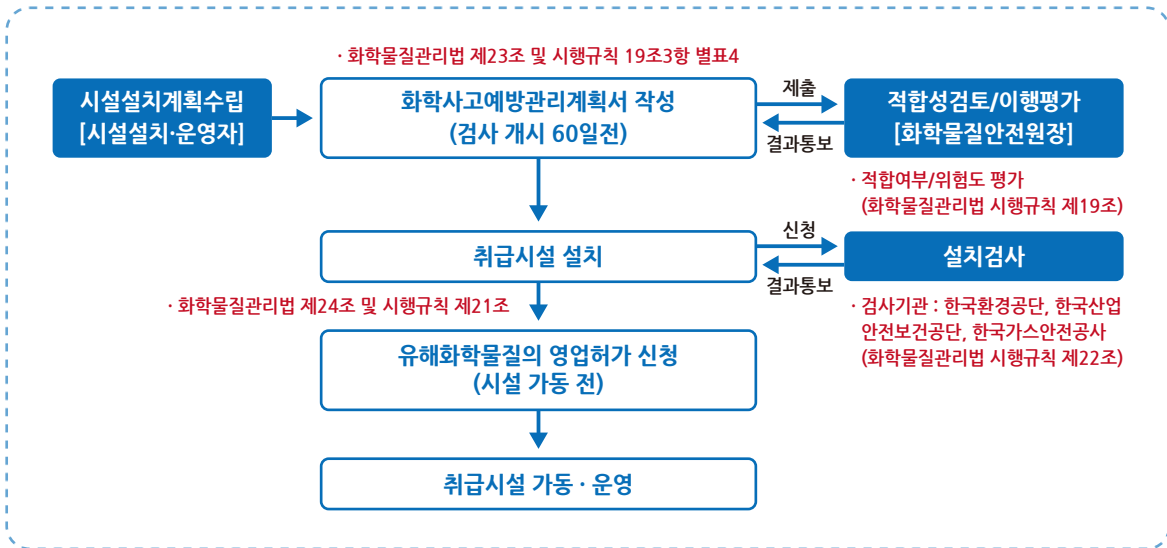
위와 같은 규정수량에 따라, **계산된 최대보유량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 이때 1종이라도, 상위 구간에 걸리는 유해화학물질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상위 구간의 이행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영업허가/신고
상위 규정수량 이상	1군 작성 대상	신규시설 검사 대상	영업(변경)허가 대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하위 규정수량 이상	2군 작성 대상	신규시설 검사 대상	영업(변경)허가 대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작성 면제	신규시설 검사 대상	영업신고 대상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작성 면제	검사 면제	허가/신고 면제

6. 업무 이행 흐름

업무는 아래 흐름도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은 파악한 이행사항에 맞게 순서대로 이행사항 서류를 작성하고, 각 부처의 적합/승인을 취득하면 됩니다.

각 이행사항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사항	현장사항	주관 부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계획서 전문 작성 ※ 작성 매뉴얼 참고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는 시공, 기타 관리 사항 완비	화학물질안전원
설치검사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 자료리스트 참고	검사기준에 맞도록 시설 정비 ※ 화관법 고시 참고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영업허가/신고	영업허가 신청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작성	-	지방유역환경청

화관법 민원24 자료실 icis.mcee.go.kr/cdms/board/listData.do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매뉴얼 참고 및 자료마당을 통한 업무 진행 중 안내 자료 참고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safechem.or.kr/main/headqBrdList.do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위 기준에 따라 이행사항을 판정할 수 있으나, 각 사업장의 물질 취급 현황 및 형태에 따라, 적용가능한 면제조건 또는 변경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화관법 대응과 업무 효율, 어떻게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알켄송현의 기업 맞춤형 솔루션!

rcsh_cca@rcsh.co.kr

빠른 진단,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까지

알켄송현(주) www.rcsh.co.kr

